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48호서식]

품질검사 의뢰서

1. 시험・검사종목	폼알데하이드, 톨루엔, 총휘발성유기화합물 (*동화기업㈜_해주N.C)
2. 시 료 명	PB(E0)(18T)
3. 시 료 량	1조 (4.채취일 : 2020 년 06 월 17 일)
5. 시료또는자재생산국	대한민국
6. 시료 채취장소	현장내 (회사명 : ㈜한진중공업)
7. 시료 채취자	소속 ㈜한진중공업 담당업무 품질관리자 성명 : 김효종 (서명 또는 인)
8. 입 회 자	소속 감리단 담당업무 건축감리 성명 : 이승섭 (서명 또는 인)
9. 시험 및 시방기준	KS M 1998(8항. 소형챔버법)
10. 성과 이용목적	■ 품질시험용 □ 자재선정용 □ 품질확인용 □ 기타 ( )
11.공사개요	공 사 명	지금도농1-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	착 공 일	2018 년 08 월 23 일
	준공예정일	2021 년 02 월 21 일
12. 발 주 자	지금도농1-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13. 시 공 자	㈜한진중공업
14. 국가중요시설 여부	

접수번호		수수료세부내역
처리기간	일간 (/)	
시험수수료합계		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・검사를 의뢰합니다.

2020 년 06 월 19 일

의뢰인 성 명 : 김 효 종 (서명 또는 인)

전화 번호 : 031-567-2580

주 소 :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19번길 3-10(도농동) 일원

[비고]

1.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"국가중요시설(시설물)"로 적습니다.
2.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, 국회의사당, 대법원, 국가정보원, 중앙행정기관의 청사, 원자력발전소, 발전용량 100만Kw 이상 발전소,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・TV방송국,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kW 이상의 송신시설, 군사시설,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.

처 리 절 차

의뢰서 작성	→	접 수	→	시험・검사 실시	→	성과서 작성,결재	→	발 급

절 취 선

접 수 증

1. 접수일 :
2. 의뢰 시험・검사 종목 :
3. 시료명 및 시료량 :

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・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( )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접수자 :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